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춘선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산림교육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해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산림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가 규정은 모호한 실정입니다.

□ 이에 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를 정의하고, 산림교육전문가의 활용과 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시 유아숲지도사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교육의 전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호를 신설하여 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제5호를 유아숲 운영계획에 유아숲지도사 배치, 교육 등 활용방안,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산림교육전문가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